

저작권대리중개업 변경신고서

접수일자	처리기간 20일
------	-------------

① 신고인	② 성 명 (법인 또는 단체명)		③ 생년월일 (법인(사업자) 등록번호)	
	④ 전화번호 (휴대전화번호)		⑤ 팩스번호	
	⑥ 주 소			

⑦ 대표자 (법인 또는 단체만 해당함)	⑧ 성 명		⑨ 생년월일	
	⑩ 전화번호 (휴대전화번호)		⑪ 전자우편 주소	
	⑫ 주 소			

⑬ 변경사항	변경 전(을)	변경 후(으로)	변경사유

「저작권법」 제10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신고증	수수료
	2.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	방문·우편 : 3,000원 인 터 넷 : 2,000원

작성요령

※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작성합니다.

- ② 신고인의 성명과 대리중개업 상호(단체 또는 법인)명을 작성합니다.(※ 상호명 기재 필수)
- ③ 신고인의 생년월일과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(※ 법인인 경우에 한함)를 작성합니다.
- ④ ~ ⑥ 신고인(사업자 및 법인 또는 단체)의 전화번호, 주소 등을 작성합니다.
- ⑦ ~ ⑫ 대표자의 성명, 생년월일, 연락처 등을 작성합니다.
- ⑬ 변경하려는 사항을 변경 전, 변경 후, 변경사유로 각 해당 란에 작성합니다.

신고방법

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하거나, 우편 또는 인터넷(www.cocomms.go.kr)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처리절차

저작권대리중개업 변경 신고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